

민원내용 및 처리내용

Q1. 장애아동수 산정특례 관련, 장애아동 1인을 2인으로 산정할 때 기존 정원 초과 시 정원변경을 해야 하는 것인지?

A. 해당 특례는 예산지원을 위한 이용아동수 산정 특례입니다.

따라서,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 장애아동 산정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위한 산정 결과가 기존 정원 초과 시 정원증원 변경해야 합니다.

또한, 장애아동이 이용하기에 충분한 면적*등 시설 기준이 충족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* (전용면적 82.5㎡ 이상,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.3㎡ 이상)

*** 2025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.110**

6) 장애아동수 산정특례 : 장애아동은 이용아동수 산정 시 1인을 2인으로 하고, 최대 5인을 10인까지 산정가능(장애아동은 등록 장애인 및 특수교육지원센터*에서 진단·평가 결과 특수교육대상으로 결정된 자에 한함)

※ (예시1) 정원이 29명인 시설에 장애아동이 3명, 비장애아동이 20명인 경우 예산지원을 위한 이용아동수는 26명으로 함($3 \times 2 + 20 = 26$ 명)

※ (예시2) 정원이 29명인 시설에 장애아동이 5명, 비장애아동이 20명인 경우 예산지원을 위한 이용아동수는 30명으로 함($5 \times 2 + 20 = 30$ 명)

※ 동 특례는 예산지원을 위한 이용아동수 산정에 적용하며, 장애아동 이용으로 시설의 정원 증원변경 시에는 시설면적 등 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

* 특수교육지원센터: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센터

Q2. 개인시설 대표자가 시설장으로 근무하려는 경우, 공개모집 없이 가능한지

A. 개인시설 대표자가 시설장으로 근무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34, 35의 전제사항을 모두 만족할 시 완화된 조건으로 공개모집 없이 채용이 가능합니다.

*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34, 35

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제하에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

[전제사항]

- ㉠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
- ㉡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
- ㉢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,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
- ㉣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

가.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,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

* 채용 당시 ①에서 제시된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등이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로 적용 가능

나. 동일한 설치·운영자가 각각 설치·운영하는 시설 간 인사 이동

* 다만, 시설장으로 근무 중인 성직자(聖職者)가 소속 종교 단체의 인사발령으로 타 시설의 시설장으로 인사 이동하는 경우, 해당 종교 단체를 「동일한 설치·운영자」로 볼 수 있음('21.1.1.부터 시행) (단, 종교 단체의 인사발령 문서 등 내부 의사결정 사항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.)

다. 설치·운영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사무국*에 근무하다, 그 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

시설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

* 법인 정관 또는 하위 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및 정원 등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

라.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통합되는 경우나 시설 위·수탁 계약에 따라 종전 종사자의 고용 관계를 승계하는 경우

마.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직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용된 경우* 해당 대체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

* 대체근무자로 최초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여야 함

Q3. 재정보증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나요?

- A. 네, 사회복지시설 예산의 적절한 관리와 정확한 집행을 위해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.
단, 회계관계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* 2025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.141~142

가. 재정관리 원칙

...

- 3) 지역아동센터는 예산의 적절한 관리와 정확한 집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(희망이음)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)을 의무적으로 활용하고, 필요한 지출 증빙서류 보관
 - 가) 보조금 신청 및 보고, 후원금 관련 보고를 온라인으로 하고, 지자체는 보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업무 처리
 - 나) 장부관리는 총계정원장, 현금출납부, 지출분개장 기입이 원칙이나,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사용 시 매월 마감 후 관련 서식을 출력 비치함으로 대체 할 수 있음
 - ※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의무 시행
- 4) **정부보조금을 운영하는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**하고,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라 투명한 회계처리 및 관리